

방화 관련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범위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글 | 김준택
동부화재 일반보상파트 부장

1. 방화와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방화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형사상으로는 현주건 조물 등에 방화를 하게 되면 형법 제 13장 164조에 의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사상으로는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750조(배상책임)의 적용을 받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실화의 경우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옆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신의 건물까지 연소되었을 경우에 가해자의 방화나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경우에만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전기합선, 원인미상 등 그 외의 경우에는 자신의 건물 피해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자의 가혹한 재정적 부담을 구제하고자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취지 및 목적과는

달리 실화를 가장한 방화자의 범의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 방화사고의 보상범위

화재보험은 보험기간 내 보험목적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해 손상된 직접 손해와 화재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비교적 보상범위가 넓지만, 그렇다고 보험금 사취목적의 방화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와 화재보험약관 제7조 1항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보험약관 제7조 2항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경우에도 면책사항으로 하고 있다. 즉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방화를 하거나 교사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연관이 없는 제3자의 방화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3. 보험금 사취 목적 방화의 표식

보험업계 보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험금 사취 목적의 방화에 나타나는 물적, 정확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험금 사취 목적 방화는 완전범죄를 위해 사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후 사건을 도모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물적, 정황적 조사가 필요하다.

가. 독립된 다수의 발화장소

방화의 물적 증거로는 먼저 독립된 다수의 발화장소의 존재이다. 방화자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가입금액 전액을 받고, 방화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보험 목적을 전소시키고자 한다. 통상 실화의 경우는 화재의 사전징후가 나타나고 무염착화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느려 대부분 화



재 초기에 진화가 완료되기 때문에 방화자는 대부분 인화성 물질 등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 착화시켜 연소를 확대시킨다. 따라서 서로 연관성이 없는 발화장소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방화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단, 실화에서도 불티, 파이프나 덕트를 통한 화재 확산, 과부하된 전기배선 등의 이유로 발화장소가 다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자는 건물의 내 외부의 구조 및 기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화장소의 독립성을 판단해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의 사용

대부분의 방화는 여러 곳을 동시에 착화함과 동시에 인화성 물질 내지는 가연물을 사용해 연소확대를 일시에 확

대시킨다. 인화물질로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휘발유, 시너, 등유, 알콜 등이 사용되는데 많은 경우 등유를 이용한다.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강력한 화염으로 인해 발화장소의 바닥에 심한 열손상이 발견되고, 인화물질을 통한 확산 유도시에도 트레일러라고 하는 흔적이 남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인화물질 대신 쓰레기, 판자 등의 가연물이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인화물질의 사용이 범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그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가연물 또한 통상의 배치상황에 맞는 것인지, 적재의 고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핀 후 방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장 방화

최근에는 치밀하게 실화를 위장한 방화로 발화원에서 과실로 발화된 것과 같이 발화시키는 위장방화가 증가하고 있다. 위장 방화의 경우도 일반 방화와 마찬가지로 연소를 조장하지 않으면 연소 확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소 확대를 조장하게 되어 있으며, 유염착화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실화에서 나타나는 연소특징인 지연확대, 국부적 연소흔, 사전징후, 자연소화 흔적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건물 내 배치된 통상의 인화물질, 가연물, 건물 구조 등에 따라 기대되는 확산속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그 피해범위가 클 경우 방화를 의심할 수 있다.

위장방화의 유형을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기배선 및 배선 기구를 통한 위장방화이다.

고의로 피복을 손상시키거나 기존 발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장 또는 이상상태의 것을 이용해 방화하는 것이다. 가스렌지, 석유스토브, 가스난로 등의 연소 기구에서 발화되도록 유도하고, 인접한 부분에 유도성 가연물과 인화성 물질을 근접시키고 환기구를 열어 연소 확대를 조장하기도 하고 전열기 등의 가전제품을 인위적으로 가열시킨 후 가연물을 접촉시켜 발화시키기도 한다.

위장방화의 경우 단순감정만으로는 인위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방화는 충분한 동기하에 연소 확대 유도시키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철저한 주변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방화개연성을 판단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하여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라. 방화설비의 손상 및 무력화

방화설비의 손상이나 무력화는 주변인의 화재 발견 및 소방서 연락을 지연 시킴으로써 화재의 제어 또는 진화를 방해한다.

이 때문에 방화자는 화재의 완전한 전개와 건물 붕괴, 전소를 유발하기 위해 사전에 방화설비를 무력화시킨다. 방화설비에는 열·연기 감지기, 경보 및 신호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장비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연기감지기의 제거나 덮기, 경보설비의 전원 차단, 스프링클러 헤드 막기, 소화 호스 연결구 나사 손상 등이 있다.

마. 비정상적인 화재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가 건물 내 배치된 통상의 인화물질, 가연물, 건물 구조 등에 따라 기대되는 확산속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그 피해범위가 클 경우 방화를 의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조사자의 주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는 공간의 외형, 인화물질의 특성, 통풍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만큼 조사자는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왜 화재가 '비정상적', '인위적' 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통계적 수치 등을 이용해 판단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한다.

바. 열려진 출입문 및 창문

방화는 대부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야간에 발생하는데, 이 때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려있을 경우 방화를 의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영업을 마치고 퇴근할 시 당연히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방화 사건에서는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방화자의 출입이나 방화 봉 투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환기를 통해 연소를 가속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 재정의 압박

보험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경기침체를 겪거나 새로운 경쟁자로 영업을 부진하여 경영수지 적자가 심각해질 경우 경영위기 탈출의 일환으로 보험금 사취 목적의 방화를 계획하기도 한다. 또한 공장이 장기간 가



동되지 않거나 휴업상태에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고철덩어리인 기계의 처분을 위해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방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아.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

재정상 압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또 하나의 방화 표식은 초과보험 및 중복 보험이다. 보험가입금액이 원래의 재산가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여러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도 방화를 의심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 시기와 화재발생 일시가 근접하다면 더욱 방화의 개연성이 높다.

위에서 말한 표식 외에도 사고 다발, 휴일 및 야간 화재, 관계자의 화상, 문서 위조 등을 통한 허위 과다 청구, 화

재 전 수용품의 이동 또는 교체, 진입로 차단, 뚜렷한 알리바이 등 방화와 관련된 표식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지면의 한계상 서술을 마치도록 하겠다. 화재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식 및 감정시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방화 사고 조사시에는 범죄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방화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 감식 외 목격자, 소방관계자 조사, 화재로 인한 피보험이익 여부 등 동기에 관한 수사를 통해 입증 차원에서의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고, 방·실화를 입증할 수 있는 초기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조사자는 단지 소수의 방화의 표식만으로 방화로 속단하여 주관적이고 편협한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방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 및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방화사고 적발 사례

가. 경유를 이용한 여관 방화

(1) 사건 개요

2005년 5월 23일 00:47분경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관에서 화재가

화재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식 및 감정시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방화 사고 조사시에는 범죄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방화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발생함. 사고 당시 계약자는 친구들과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고, 실질적인 관리자였던 부인과 아들 또한 친연니집, 친구집에 가 있는 등 계약자의 주택 및 영업장 내에 계약자의 가족은 아무도 없었음. 여관에는 장기 투숙자 1명만이 2층 6호실에서 취침중이었으며, 다행히 화재시 탈출에 성공하여 다리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음.
사고 당시 계약자는 사고당시 건물, 집기, 시설을 보험목적으로 3.5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음.

(2) 조사된 방화 의문점

- 건물 전층에 걸쳐 7개의 독립된 발화개소가 발생함.
- 평상시 22:00시에 출입문을 잠가 왔으나 사고당일에만 시건장치를 하지 않은 채 모든 가족이 집을 비웠음.
- 금융비용이 영업수입의 2배를 초과하는 등 방화 외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음.
- 영업개시일 이후 6년간량을 무보험 상태로 있다가 영업을 부진한 상황에서 갑자기 거액의 화재보

험에 가입함.

- 실제 손해액의 두 배 이상의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함.

(3) 적발 경위 및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건물 전 층에 걸쳐 7개 소의 상호연관성이 없는 발화개소가 발견되고, 연소 잔존물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되는 등 인위적 착화에 의한 사고로 밝혀짐.
방화의 동기가 충분하고, 건물 3층에 걸쳐 7개 소에 경유를 뿌린 후 방화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자 본인 뿐이라는 판단 하에 관할 경찰과 긴밀히 협조 수사하여 2004년 6월 30일 현주건조물 방화 및 사기미수죄로 계약자를 긴급 체포하였고, 같은 해 7월 8일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음.

나. 가연물을 이용한 마트 방화

(1) 사건 개요

2006년 1월 1일 20시 53분경 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동산 및 집기 등이 소훼됨. 본 마트는 2005년 12월 28일자로 폐업한 상태였으며, 계약자는 신정연휴인 사고당일 다른 종업원 1명과 함께 출근해 매장을 정리하였고, 퇴근 후 5분여 만에 화재가 열감지기에 포착되었음.

(2) 조사된 방화 의문점

- 발열기구, 자연발화, 전기적 원인에 의한 착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석유 난로 주변에서 등유가 검출됨.
- 석유난로는 뚜껑이 닫힌 상태로 쓰러지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유는 석유난로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며, 생활용품 마트에서 매장 내 석유통을 보관할 이유가 없었음.
- 원래 판매용 두루마리 화장지는 최초 발화 장소에서 멀리(25m) 떨어



- 진 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사고 직전 옮겨놓아 가연물로 사용함.
- 예정에도 없던 매장 정리 작업을 굳이 신정 연휴에 갑자기 유선으로 종업원을 불러 하였음.
- 최초 발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열감지기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은 점.
- 기준에 보험가입한 5억 원의 화재보험만으로 보장이 충분함에도 건물과 동산 3억 원을 추가로 가입함.
- 폐업으로 더 이상 판매나 반품이 불가능한 재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경유가 검출되는 등 인위적 착화로 밝혀졌고, 계약자 퇴근 후 단 5분만에 최초 발화지점과 떨어져 있던 열감지기에 감지됨으로써 계약자 외 타인의 방화를 의심할 수 없고, 평소의 달리 두루마리 화장지(가연물)를 발화지점에 적재해 연소 확대를 조장하고 실화로 위장하려고 한 점 등 방화혐의점이 짙어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 수사하여 2006년 5월 12일 일반건조물 방화죄로 기소한 후, 2007년 5월 31일 징역 2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임. (㉮)



[참고문헌]

1. '보험범죄조사', 손해보험협회, 2005
2. '화재조사개론'
3. 서문 수철, '경찰화재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조사학회, 2006
4. 'Guide for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ions', NFPA, 2001

(3) 적발 경위 및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